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피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②(생략) ③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u>사회산업과장</u> , 분임기금 출납공무원을 구의 <u>의료보장계장</u> 으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②(현행과같음) ③..... <u>사회복지과장</u> ,..... <u>사회계장</u>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3.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사회과장

나. 내 용

- 제3조(명칭 및 위치) 별표의 위치 중 상동사회복지관의 남구를 원미구로,
- 춘의사회복지관의 중구를 원미구로 개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 음

나. 찬성토론 : 없 음

5. 수정안 내용 : 없 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9
의 결	95. 3. 28
년 월 일	(제36회)

제출년월일 : 95. 3. 17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구 명칭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3조(명칭 및 위치) 별표의 위치 중 상동사회복지관의 남구를 원미구로, 춘의사회복지관의 중구를 원미구로 개정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중 위치란의 “남구 상동”을 “원미구 상동”으로 하고 “중구”를 “원미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별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상동사회복지관	남구 상동 336-6		원미구 상동
춘의사회복지관	중구 춘의동 237		원미구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결과

1. 심사일정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3.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